

2025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엠북 공기업/공단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출제기준 반영, 고득점 가능
- ★ 국민건강보험법 준용 내용 포함
- ★ 최근 법 개정 내용 반영, 78분 완성

도서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ISBN : 979-11-94286-95-0

발간일 : 2025-03-20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8,5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6)

제2장 장기요양보험(p13)

제3장 장기요양인정(p57)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p66)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p71)

제6장 장기요양기관(p80)

제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p110)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p121)

제8장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p123)

제9장 관리운영기관(p124)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p133)

제11장 보칙(p136)

제12장 벌칙(p151~156)

[약어]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부령은 보건복지부령

국가등은 국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

기관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장

등급은 장기요양등급

등급위는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는 시, 군, 자치군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시군구등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군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지자체장은 시도지사, 시군구

종사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분납은 분할납부

보험료는 별도 명시 없으면 장기요양보험료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하늘색은 국민건강보험법 준용 내용

붉은색은 시행예정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6조

1. 목적

-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등에 제공하는
-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급여 사항을 규정해
- 노후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 부담을 덜어
- 국민 삶의 질 향상

2. 정의

가. 노인등

-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상 노인성

질병 가진 자

나. 장기요양급여(이하 급여)

-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하기 어려운
자에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
서비스,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

다. 장기요양사업(이하 사업)

- 보험료, 국가등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노인등에 급여 제공

라. 장기요양기관(이하 기관)

- 시군구등의 지정 받은 기관으로서 급여
제공

마. 장기요양요원(이하 요원)

- 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3. 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하게 함
-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과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 고려해 필요한 범위내 제공
-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 받는 재가급여 우선
-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게 의료서비스와 연계

4. 국가등의 책무 등

가) 노인성질환예방사업(노인이 혼자 일상생활 하도록 온전한 심신상태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 실시 요

- 국가는 사업 수행 지자체나 공단에 비용 지원 가능

나) 노인인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적정한 수의 기관을 확충하고 기관 설립 지원 요

다) 급여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공단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가능

라) 요원 처우 개선, 복지 증진, 지위 향상

적극 노력

마)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표준 개발/보급
가능

바) (25년 6월 21일 부터) 국공립 기관 확충
노력(신설)

5. 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시행시 노인, 장애인
등 혼자 일상생활 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 제공받도록
노력하고,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 시책 강구

6. 장기요양기본계획

가) 장관은 5년 단위로 수립/시행

나) 내용

- 연도별 급여 대상인원, 재원조달
- 연도별 기관,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 요원 처우
- 대통령령 사항

다)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7. 실태조사

가) 장관은 3년마다 다음 사항을 정기
조사하고 결과 공표

- 장기요양인정

- 수급자(등급위 판정에 따라 급여 받을 자)
규모, 급여 수준, 만족도
- 기관
- 요원 근로조건, 처우, 규모
- 사업에 관한 부령 사항

나) 이외 부령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장기요양보험

7~11조

제1절 보험료 등

1. 장기요양보험

가) 장기요양보험사업

- 장관이 관장
- 보험자는 공단

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다) 공단은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상

외국인이 신청시 부령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 가능

2.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가. 징수

- 1) 공단이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징수
- 2)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구분 고지

3)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

나. 산정

-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경감/면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곱함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 심의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기요양보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경감/면제 비용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